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31 선고 2021가단1426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3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29. 체결된
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
12. 20. 접수 제63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이관용

별지